

<<합격자 결정>>

- ◇ 「소방공무원임용령」 제4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총점 60점 중 3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함
- ※ 각 종목별 측정 방법은 소방공무원채용시험 시행규칙 제7조 별표4를 참조.

다. 서류전형

- 서류전형은 응시자격요건, 경력, 가산특전 등 적합여부를 서면으로 심사
- 응시자격 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가 적합한 자는 합격 처리

라. 신체검사 및 인·적성검사

- 신체검사 : 지정병원에서 시험실시기관의 관계자 입회하에 검사 실시 (수수료 개별 납부)
단, 항공분야는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승무원 신체검사증명으로 대체하며 신체검사 당일 제출하여야 함.

<<합격자 결정>>

- ◇ 「소방공무원임용령」 제4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에 적합한 사람 모두를 합격자로 하며, 불합격 판정기준은 「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」 제6조 제3항에 의하되 흉위와 눈(시력)에 대한 내용은 개정된 「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」 별표 5의 신체조건표에서 정한 사항을 반영합니다.

- 인·적성검사 : 일정 및 방법은 향후 별도 안내하며, 검사결과는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

마. 면접시험

- 면접방법 : 1단계(집단면접) + 2단계(개별면접)
- 인·적성검사, 결격사유조회 등에 의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·능력·발전성 및 적격성을 검증

<<합격자 결정>>

- ◇ 「소방공무원임용령」 제46조 제3항에 따라,
- 1단계와 2단계 면접의 평정요소에 대한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%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으로 결정함.
단 시험위원의 고변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%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함.

바. 최종합격자 결정

- 최종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성적 75%, 체력시험성적 15% 및 면접시험성적 10%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(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)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하며,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 합니다.
- ※ 구급분야 남·여는 각 선발 예정인원보다 최종합격자가 미달될 경우 그 인원만큼 동일분야에서 선발함.
- ※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거나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.